

「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·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6개 통·리 증설 따른 통·리장 6명 증원(안 별표)
 - 당초: 698개 통·리장(통장 495, 리장 203)
 - 변경: 704개 통·리장(통장 493, 리장 211)
- 조정내역

읍면동별	현 행	조 정	증감사항
	정 원	정 원	
계	169	175	증6
고아읍	50	54	증4
산동읍	36	40	증4
송정동	32	34	증2
원평동	23	21	감2
비산동	28	26	감2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기 타: 통리반 증감에 따른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 후속 조치로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부합되도록 통리장 정수와 관할 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음.